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	기	관	의	장	
선					
람					



제1300호 2023. 9. 27. (수)







시화-철쭉 시조-갈매기 시목-느티나무

#### 시 고

○ 삼척시 고시 제2023-159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----- 2

#### 공 고

○ 삼척시 공고 제2023-1606호 삼척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및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-----

발행 : 문화홍보실 (전화 : 570-3221, FAX : 570-3132)

삼척시 고시 제2023-159호

###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9. 27.

### 삼 척 시 창

### O 도로명주소 부여: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영경로 442-10 외 1건

<b>중</b> 천주소	99	도로명주소	乒	로명	
97.17	주소	고시일	사유	고시일	부여사유
***		(별지참	<b>೬</b> )	120	26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만원과(☎570-3946~9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,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#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### O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」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### ㅇ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총천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순	3 T. T. L	도로	명주소	도로명		
번	종전주소	주 소	고시일	사유	고시일	부여 사유
1	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상사전리 50	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영경로 442-10	20230927	신규 부여	20090626	문화재(영경묘) 명칭 활용
2	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노곡면 상마읍리 산26-4	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노곡면 문의재로 2107-281	20230927	신규 부여	20090904	자연지명명칭 반영(문의재)
		이	하	여	백	
- 8		8	35			
			100 P		10 10	
2 8		89				
		55				
2 - 3		8)				
		500				
_		2)			2 3	

### 삼척시 공고 제2023-1606호

「삼척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및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와「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26일

삼 최 시 장

# 삼척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및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안

## 1. 제안이유

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, 모성의 건강관리와 임신·출산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신체적· 정신적·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, 제정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, 시장의 책무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(안 제3조~제4조)
- 다.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
- 라.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6조)
- 마. 재정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규정(안 제8조)
- 3. 입법예고기간 : 2023. 9. 26 ~ 10. 17.(21일간)

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

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(건강증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 · 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, 성명(기관·단체인 경우,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의견(참고사항 등)
- 라, 의견제출 및 문의처
  - 주소 : 삼척시 척주로 76, 삼척시보건소(건강증진과)
  - 전화: 033-570-4674
  - FAX: 033-570-4167

### 5.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이 조례 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(http://samcheok.go.kr) 입법/공고/고시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- 붙임 1. 삼척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및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안 1부.
  - 2.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(서식) 1부. 끝.

### [붙임 1]

## 삼척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및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,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삼척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임산부"란 「모자보건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.
- 2. "모성"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.
- 3. "영유아"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- 4. "신생아"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- 5. "미숙아"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.
- 6. "선천성이상아"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.
- 7. "모자보건사업"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.
- 8. "난임"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.
- 9. "고위험 임산부"란 의사로부터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를 말한다.
- 10. "출산축하용품"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의 출산과 신생아의 양 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.

-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삼척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 강을 유지 · 증진하기 위한 조사 · 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.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세부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 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5조(모자보건사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임산부 건강관리사업
- 2.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
- 3. 모성, 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
- 4.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
- 5. 미숙아,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
- 6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
- 7.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사업
- 8.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
- 9.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
- 10.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
- 11.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- 제6조(출산축하용품 지원) ① 시장은 출생아 한 사람당 1회에 한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출산축하용품의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이며,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 대원이어야 한다.
  - ③ 출산축하용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삼척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.
  -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,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출산 축하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제7조(임산부의 날)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 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- 제8조(재정지원)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 또는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9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- 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#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

- 자치법규명: 삼척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및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안
- 의견제출자:

제 정 안	검 토 의 견			
4138	수정안	검토사유		